베트남

식품등록증 발급 폐지로 수입식품의 행정절차 간소화

하노이지사

식품안전인증서 발급 절차 대폭 간소화

- 지난 2월 2일 공표·발효된 베트남 정부 시행령 No.15/2018/ND-CP에 따라 식품등록증 발급 절차가 변경됐다. 시행령에 따라 대부분의 식품 수입업체 및 생산업체는 베트남 정부에 식품등록증을 신청해 발급받았던 것과는 달리 자체적으로 식품안전위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단, 건강보호식품, 36개월 이하 유아 대상 영양식품, 새로운 효과를 주장하는 혼합식품첨가물, 의사의 처방으로 환자가 섭취하는 식품 등은 예외대상이다.[1)]

- 기존의 식품등록증 신청절차는
  ① 민간 식품검사소에서 수입할 식품의 샘플로 성분 검사를 진행, 결과지를 수령하고,
  ② 수입할 식품의 제품 정보와 성분검사 결과지를 베트남 보건부 식품안전국에 제출, 수입허가증을 신청한 뒤 승인을 받아야 했다.

- 또한 발급 과정 상 일반식품의 경우에는 평균 1,000만 동(VDN, 한화 약 47만5,000원), 기능성식품의 경우 3,000만 동(한화 약 142만5,000원)의 비용이 소요됐으며, 평균 4개월의 시간이 걸렸다.[2)]

- 게다가 제품에서 문제가 확인됐을 때 그 책임은 생산업체나 수입업체가 자체적으로 지게 돼 있어, 당국에서 발급한 식품등록증의 효력이 무색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3)]

변경된 식품위생안전증명서 취득절차

- 수입업체가 자체적으로 식품안전위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한 새 시행령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수입식품에 대해 별도의 인증을 하지 않으며, 제품의 안전 책임은 수입업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대신 정부는 시판되는 제품에 대해 사후검사를 실시한 뒤 식품안전위생에 문제가 있는 제품을 유통시킨 수입업체는 면허취소 등의 조치로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변경된 절차의 이점

- 증명서 발급에 필요했던 구비서류의 종류뿐 아니라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도 줄어 수입업체들의 부담이 대폭 경감되었다.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부티엔록(Vu Tien Loc) 회장은 새 시행령으로 기존의 불명확하고 불특정적이던 규제가 제거되고 행정절차가 명확해지면서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내다봤다.[4)]

1) 〈Cục An toàn thực phẩm〉, "Nghị định mới thay đổi căn bản cách quản lý an toàn thực phẩm" (2018.02.09)
2) 〈VGP News〉, "A "revolution" in food safety management" (2018.02.24)
3) 〈Vietnam Investment Review〉, "Blow for food safety in Vietnam" (2018.03.06)
4) 〈Vietnam Investment Review〉, "New decree to serve as motivation for Vietnamese businesses" (2018.02.25)

베트남 정부의 사후검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 베트남 수입업체의 절차 · 비용 · 시간적 부담이 줄면서 한국식품의 베트남 수출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입업체가 식품안전위생증명서를 자체 발급할 수 있게 되면서 베트남 시장진출에 소요되는 기간 역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단, 베트남 정부의 시판 제품 사후검사에 대비해 현지 냉장유통체계의 부실로 생길 수 있는 제품 변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조 : 〈Thư Viện Pháp Luật〉, Decree No. 15/2018/ND-CP(2018.02.02) / 〈Minh Khue〉, "Tư vấn thủ tục tự công bố thực phẩm" (2018.02.07)